

# 대법원 2023도16318 업무상과실치사등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895)

부산광역시청 및 부산광역시 동구청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이 2020년 발생한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재난대응과 출입통제시스템 관리 등에 관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, 그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

대법원 1부(주심 대법관 노태약)는, **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**,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,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**원심판결을 확정**하였음(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3도16318 판결)

## 1. 사안의 개요

### 가. 피고인들의 지위

- 이 사건 사고 당시 부산광역시청 공무원
  - 피고인 1(재난대응과장)
- 이 사건 사고 당시 부산광역시 동구청 공무원
  - 피고인 2(부구청장), 피고인 3(안전도시과장), 피고인 4(건설과장), 피고인 5(건설과 기전계장), 피고인 6(건설과 기전계 주무관)
-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부산광역시 동구청 공무원

- 피고인 7(2016. 8. 3. ~ 2018. 8. 31. 건설과 기전계장), 피고인 8(2014. 8. 1. ~ 2018. 2. 4. 건설과 기전계 주무관)

## 나. 공소사실의 요지

### ▣ 이 사건 사고의 발생

- 2020. 7. 23. 14:00 호우주의보 발효 ⇒ 20:00 호우경보 발효
- 2020. 7. 23. 21:50경까지 초량제1지하차도 진출입로에서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해문자전광판과 경광등이 작동하지 않아, 지하차도 진행 중인 차량 6대가 침수되어 3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,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음

### ▣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

-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함
- 피고인 1 ⇒ 부산광역시청 재난대응과장으로 ① 대책본부장인 부산광역시청 권한대행에게 기상특보 상황 미보고, 기상상황에 적합한 조치 미건의, ② 스스로 비상단계 상향 미조치
- 피고인 2 ⇒ 동구청 부구청장(동구청장 부재로 구청장 직무대행)으로 ① 시설물 예찰결과 및 출입·교통통제 현황 점검·보완,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 파악 등 미지시, ② 초량제1지하차도에 현장 직원이 배치되었는지 등 지휘·감독 미조치
- 피고인 3 ⇒ 동구청 안전도시과장으로 동구청 안전도시과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요원 2명 배치, 재해문자전광판 출입통제 문구 표출 등 미점검, 미지시
- 피고인 4 ⇒ 동구청 건설과장으로 초량제1지하차도 현장 담당자 배치 미점검, 미지시
- 피고인 5 ⇒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장으로 ① 초량제1지하차도 현장에 기전계 직원 미배치, ② 초량제1지하차도 출입통제시스템 중 재해문자

전광판 문구 원격입력시스템 미수리 등

- 피고인 6 ⇒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주무관으로 초량제1지하차도 출입 통제시스템 중 재해문자전광판 문구 원격입력시스템 미수리, 경광등 미점검
- 피고인 7, 8 ⇒ 前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장 및 건설과 기전계 주무관으로 초량제1지하차도 출입통제시스템 중 재해문자전광판 문구 원격입력시스템 미수리, 후임자들에게 고장사실 등 미전달
- ▣ 피고인 3, 6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
  - 피고인 3 ⇒ 피고인 1이 호우주의보 발효 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도 상황판단회의를 실제로 개최한 것처럼 개최 계획, 개최 결과가 기재된 허위의 공문서 결재 후 경찰에 제출
  - 피고인 6 ⇒ 초량제1지하차도의 기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행위를 하거나 점검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허위의 점검표 작성 후 경찰에 제출

## 2. 소송경과

### ▣ 제1심

- ①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, ② 피고인 3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➡ **유죄**
  - 피고인 1 ⇒ 벌금 1,500만 원, 피고인 2 ⇒ 금고 1년 2월, 피고인 3 ⇒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, 피고인 4 ⇒ 금고 1년, 집행유예 2년, 피고인 5 ⇒ 금고 1년, 피고인 6 ⇒ 벌금 1,000만 원, 피고인 7 ⇒ 벌금 1,000만 원, 피고인 8 ⇒ 벌금 1,000만 원
- 피고인 6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➡ **무죄**

### ▣ 원심

- 피고인 1, 2, 7, 8 ➡ **무죄**
  - 피고인 1 ⇒ 업무상과실은 인정되나,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난

안전대책본부장에 의하여 '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'에 해당하는 '비상2단계' 격상 및 근무반 확대 편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, 피고인 1 스스로 비상단계를 상향할 권한이 없음

- 피고인 2 ⇒ 동구청장이 하계휴가 중 호우경보 발령과 동시에 복귀하였으므로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가 종료되었고, 설령 호우주의보 발효 당시 피고인 2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
- 피고인 7, 8 ⇒ 피고인 7, 8이 다른 부서로 발령받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, 업무상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
- 피고인 3, 4, 5, 6 ⇒ **유죄**
  - 피고인 3 ⇒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, 피고인 4 ⇒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, 피고인 5 ⇒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, 피고인 6 ⇒ 벌금 1,500만 원
- 검사 및 피고인 3, 4, 5, 6 상고

### 3. 대법원의 판단

#### 가. 쟁점

- ▣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
- ▣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

#### 나. 판결 결과

- ▣ 쌍방 상고 모두 기각(원심 수긍)

#### 다. 판단 내용

- ▣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(피고인 1, 2, 7, 8에 대하여)
  - 원심의 무죄 판단에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

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

▣ 피고인 3, 4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

-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고,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

▣ 피고인 5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

-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,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

▣ 피고인 6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

-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,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